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띄어쓰기와 준용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 상위법 중복 문구 삭제(안 제2조)
-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조항 개정(안 제5조)
 - 지원사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분의 50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 지원한도: 세대당 최고 100만원 지원 → 최고 200만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최고 200만원 → 최고 300만원 지원
- 보조금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366,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

- 붙임 1.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를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용어의 뜻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용어의 뜻은 「도시가스사업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8.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세

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옥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p> <p>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p> <p>3. (생략)</p> <p>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p> <p>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p>	<p>제1조(목적) --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 ----- ----- ----- ----- ----- -----.</p> <p>제2조(정의) ----- -----.</p> <p><삭 제></p> <p><삭 제></p> <p>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p>

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6.·7. (생략)

<신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공급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규모)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공급 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보조금의 교부) ① 제8조에

행령」 별표 1의 제1호-----
-----.

6.·7. (현행과 같음)

8.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9. -----
----- 용어의 뜻은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5조(지원규모)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시사가 고시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보조금의 교부) ① -----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나. (생략)

<신설>

2. (생략)

② (생략)

-----.

1.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
인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건